

코로나19 관련,
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(7차)
일부 변경

2020. 8. 24 .



보건복지부
요양보험제도과

h·well

국민건강보험



코로나19 관련

‘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(7차)’ 일부 변경 안내

□ 관련근거

- “코로나-19 관련,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(7차)”
(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-1827호, 2020. 6. 29.)

□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기준 변경

- (목적)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‘20.8월 계획한 방문상담이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사례 증가로 어려워짐에 따라 수급자(또는 보호자) 방문상담 거부 시 대체인정하는 유선상담 횟수 변경

현행	변경
방문상담(월 1회)을 유선상담(주 1회)으로 대체 인정 *급여제공 중(급여제공시간) 주 1회 (월~일요일 기준) 유선상담(수급자, 종사자)하여야 인정함.	유선상담 대체 인정횟수를 주 1회에서 월 2회로 변경 * 급여제공 중(급여제공시간) 월 2회 유선상담하고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‘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’에 기재(월 2회)

- (적용월) 변경된 기준은 ‘20.8월 급여제공분에 한해 인정
- ‘20.9월부터는 변경 전 7차 지침의 기준을 적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문상담 거부가 예상될 경우, 주 1회 유선상담 시 방문상담 (월 1회)으로 인정

* 방문요양기관은 월 초에 수급자 전원에 대해 방문상담 거부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방문상담 거부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유선상담 충족 필요